

[일련번호 : 30]

양 천 구

주 의 요 구

제 목 예산과목 집행 부적정
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△△동
내 용

1. 업무개요

△△동은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 등에 따라 예산 집행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.

2.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

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 제13조(세출예산 집행기준) [별표 2]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르면,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일반운영비(사무관리비, 공공운영비, 행사운영비 등), 자산취득비,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.

- | |
|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사무관리비(201-01) : 일반수용비, 위탁교육비, 심사수당, 피복비, 급량비, 임차료- 공공운영비(201-02) : 우편물 발송대, 제세금, 통신료 회선사용료 등 |
|---|

3.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

△△동은 사무관리비로 집행하여야 할 무인기계 용역비 지급 시 공공운영비로 집행하여 예산과목의 용도에 맞지 않게 경비를 집행한 사실이 있다.

[표] 부적정 집행 내역

연번	이용기간	집행과목	지급내역	금액(원)	적정과목	비고
1	2024.1월~12월	공공운영비	무인기계경비 용역비 납부	월220,000	사무관리비	

4.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

△△동은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.

5. 조치할 사항

△△동장은

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기 바라며, 예산 집행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·감독하시기 바랍니다. (주의)